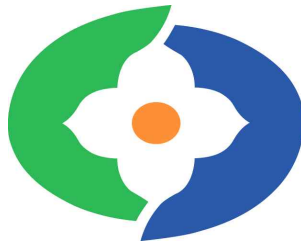


2018년도
안전관리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11. 12. ~ 11. 16. (5일간)
- 대상기관 : 안전관리과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10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1건
 - 행정상 조치 : 11건(주의 7건, 시정 4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8,534,910원
 - 신분상 조치 : 1건(훈계 1건)
- 수범사례
 - 불법어업의 효율적 단속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금강 등 큰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인 4개면(용산면,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에 15대 설치하여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물놀이 사고예방의 선제적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4개팀	총 11건 (안전총괄 3, 재난복구 1, 재난예방 2, 민방위 3, 공통 2)	주의 7 시정 4	훈계1	회수 4건 8,534,910원
1	안전총괄	◦ 하천 등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소홀	주의		
2		◦ 거부처분시 불복 구제절차 안내 소홀	주의		
3		◦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부적정	주의		
4	재난복구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주의		
5	재난예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시정		회수 384,000원
6		◦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시정		회수 5,490,000원
7	민방위	◦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회수 46,200원
8		◦ ○○○○○ 냉난방기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9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주의	훈계1	
10	안전총괄 민 방 위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 소홀	주의		
11	재난복구 민 방 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614,71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하천 등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소홀

【현 황】

○ 변상금 부과현황(2016~2018년)

회계 년도	회계과목	세목명	부과대상	납부자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원)	비고
계				10명		4,277,800	
2016	3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6-02-11	356,300	
2016	4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6-06-17	985,080	
2016	41-206002	공유수면	-	-	2016-10-07	1,504,850	
2017	3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7-07-17	210,150	
2017	3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7-08-01	48,180	
2017	3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7-08-18	201,400	
2017	4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7-11-13	186,300	
2018	3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8-04-11	27,130	
2018	4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8-04-11	456,140	
2018	41-286004	하천사용료변상금	-	-	2018-05-15	302,270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추출자료

【위법부당사항】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하천법 제37조),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하천법 시행령 제43조),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며,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9조)
- 소하천 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 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이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8조)

- 관리청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행정절차법 제2조, 제3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 대법원 역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 ▶ 그럼에도 안전관리과는 2016년 2월 11일 하천사용료변상금 부과외 9건의 침해적 처분시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처분시 생략사유를 함께 통보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곧바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여 행정절차상 변명의 기회 부여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향후 변상금 부과등 침해적 처분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타당성 결여로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거부처분시 불복 구제절차 안내 소홀

【현 황】

○ 거부처분 현황

민원명	민원인	처리현황			불가사유	구제절차 고지여부	비고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소하천점용·사용허가 신청	-	2017.04.☆☆	2017.5.☆☆	2017.04.☆☆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철거 요청한 대상임	부	
소하천점용·사용허가 신청	-	2017.04.☆☆	2017.5.☆☆	2017.05.☆☆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철거 요청한 대상임	부	

【위법부당사항】

-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한다(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4

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15조), 관리청이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제6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정민원”에 대해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7조).
-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5조).

- ▶ 안전관리과에서는 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법정민원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의 허가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거부처분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7년 4월 ☆☆일 및 4월 ☆☆일 접수된 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해 불가통보를 하면서 거부이유만 명시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법정민원 검토결과 거부(반려)처분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세입조치 부적정

【현 황】

(단위:원)

계좌번호	이자 발생일	예금 이자	세입 조치일	세입조치 금액	차액	비고
-	2017.12.24	330	2017.12.29	530	200	신용카드 계좌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4호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분임)징수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라 본청의 징수관(행정복지국장)은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을 본청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관·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며, 제154조에 따라 채권관리관(본청의 경우 소관 담당관·과장)이 채권액(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고에 납입하고 수납필통지서, 수납부

또는 체납부의 관계대장에 소인하고 담당자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과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2017년 12월 29일 공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330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했어야 함에도 530원을 세입조치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공공예금 계좌 발생이자 세입조치시 금액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이행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공사금액(천원)			비고
				계	도급액	도급자 관급액	
○○○○○○ ○○사업	㈜☆☆건설 △△△	18.06.☆☆	18.06.28 ~ 19.06.22	315,474	247,174	68,300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비의 사용), 제32조의 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

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 18.06.☆☆ (주)☆☆건설 △△△와 계약하여 추진중인 「◎◎◎◎ ◎◎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자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 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8. 11. 16.)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공사 착공계 접수시 도급자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 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84,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부적정

【현 황】

○ 시설공사 제잡비율 초과 산출현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 □□□□사업	○○○○(주) ▲▲▲	18.05.☆☆	18.05.09 ~ 18.06.07	36,428	36,045	384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법령 및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산식은 도급자관급 미포함 시 “(재+직노)×요율” 로 적용하고, 도급자관급 포함 시 a.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 b. (재+직노)×요율×1.2 중 적은 값을 제경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 ▶ 그런데, 18.05.☆☆ ○○○○(주) ▲▲▲와 계약하여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하천 준설사업에 대해

설계 시 특수 및 기타건설의 준설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85%로 적용하여야 하나 2.93%로 과다 적용하였고, 또
한 내역서상 도급자관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로서 “도급자
관급액 미포함 시” 산식($((\text{재}+\text{직노})\times\text{요율})$)으로 적용할 것을 “도
급자관급액 포함 시” 산식($((\text{재}+\text{직노})\times\text{요율}\times 1.2)$)으로 잘못 적용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38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사업」에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4,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요율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49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

【현 황】

사 업 명	도급자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액	
▲▲▲ ○○○○○ △△△△사업	□□건설 ☆☆☆	18.01.☆☆	18.01.15 ~ 18.06.10	133,800	128,310	5,49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그런데도, 2018.01.☆☆. □□건설 ☆☆☆과 계약하여 완료된 「▲▲▲ ◎◎◎◎◎ △△△△사업」에 있어 1공구 기존 상수관로 37m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상수도 관로 매설 9.5m만 설치되고 나머지 27.5m(관매달기 17m, 관로매설 10.5m)는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5,490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 ◎◎◎◎◎ △△△△사업」에 설계변경 등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5,490,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공사감독 및 계약관련 제반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6,2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특별) 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강사수당 지급현황

(단위 : 원)

지급일	프로그램명	기 간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공제세액
	(강사명)						
2016.10.28. 2016.11.18.	2016년도 ▲▲▲ ★★교육 ◎◎◎(전문강사)	2016.10.28. 2016.11.18.	400,000	0	0	400,000	13,200
2016.11.09.	2016년도 ▲▲▲ ★★교육 △△△(전문강사)	2016.11.08.	300,000	0	0	300,000	9,900
2017.06.07. 2017.06.08.	2017년도 ▲▲▲ ★★교육 ◇◇◇(전문강사)	2017.06.05. 2017.06.07.	400,000	0	0	400,000	13,200
2017.09.14.	2017년도 ▲▲▲ ★★교육 □□□(전문강사)	2017.09.13.	300,000	0	0	300,000	9,900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안전관리과에서는 2016년도 ▲▲▲ ★★교육 및 2017년도 ▲▲▲ ★★교육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위 현황에서와 같이 ◎◎◎ 외 3명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2016년도 ▲▲▲ ★★교육 및 2017년도 ▲▲▲ ★★교육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외 3명의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의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46,200원을 원천(특별) 징수하기 바라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 와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냉난방기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보조사업자	지원내역			비고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2018	-	○○○○○○○ 냉난방기 지원	21,450	21,450	- 보조금 20,000 - 자부담 1,45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영동군 ○○○○○○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원활한 ○○○○○○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차

량유지 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안전관리과에서는 2018년 ○○○○○○ 냉난방기 지원과 관련하여 영동군 ○○○○○○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 등) 제1항 1~4호에서와 같이 ○○○○○○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조례개정 등의 근거마련 없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향후에도 조례상 지원범위에 없으나 ○○○○○○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조례의 근거없이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현 황】

○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현황

연번	읍면동	민방위대 구분	대원 성명	과태료 미부과 사유
계			5명	
1	-	-	-	과태료 부과자료 불충분(공시송달 미시행)
2	-	-	-	과태료 부과자료 불충분(공시송달 미시행)
3	-	-	-	과태료 부과자료 불충분(공시송달 미시행)
4	-	-	-	2017.11.21.전입
5	-	-	-	2017.12.26.전입

【위법부당사항】

○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2회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가 반송등의 사유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시행규칙 제39조).

▶ 안전관리과에서는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5명중 2017.11.21.일 전입자 ○○○과 2017.12.26.일 전입자 ☆☆☆에 대해서는 2017년 민방위 교육 계획(안전관리과-3931)상 제1차 보충교육은 10월(10.13.), 제2차 보충교육은 11월(11.10~11.11)에 훈련 일정이 이미 마감되어 보충교육명령을 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 민방위대 대원 ★★★ 외 2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불참에 대해 보충교육 훈련 통지서를 발송 후 수령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미확보시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을 위해 교육훈련 소집 통지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통지서 수령여부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반송 등으로 미확보시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발송 및 반송분 공시송달에 관해 본청과 읍·면간 업무분담 및 절차이행에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및 정산검사 업무 소홀

【현 황】

①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현황

년도	보조 사업자	지원내역		사업완료일	사업정산 보고일	정산검사일	비고
		사업명	지원액 (천원)				
2016	-	○○○○○○ ○○행사	9,000	2016.06.25.	2016.07.26.	2016.08.29.	
2017	-	○○○○○○ ○○차량 지원	25,000	2017.05.22.	2017.05.23.	2017.07.27.	
2017	-	○○○○○○ ○○차량 지원	25,000	2017.05.23.	2017.05.24.	2017.07.27.	
2017	-	☆☆☆ ☆☆☆☆ ☆☆☆☆ ☆☆ ☆☆☆☆사업	1,481	2016.11.22. ~ 2017.12.04.	-	2017.12.29.	

② 정산검사 시 증빙서류 관련 부적정 현황

년도	보조 사업자	지원내역		사업정산 보고일	정산검사일	증빙서류 부적정	비고
		사업명	지원액 (천원)				
2017	-	제○○회 ○○○○○○ ○○○○○○○대회	6,000	2017.11.24.	2017.11.28.	1건 2,377천원	
2017	-	☆☆☆ ☆☆☆☆ ☆☆☆ ☆ ☆☆☆☆☆사업	1,481	-	2017.12.29.	9건 1,106천원	12개소

※ 증빙서류 관련 세부내역 현황

① 교부결정전 사업비 집행 : 3건(통장 이체일 기준 2건,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건)

② 증빙서류 부적정 : 8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미발행)

이체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 ☆☆☆ ☆☆☆☆ ☆☆☆☆ ☆☆ ☆☆☆☆사업의 경우 △△△△△△ 외 5개소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없이 총 6개소 73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 ★★★★★ 외 1개소의 보조사업자의 경우 통장이체일(2016.12. 5.) 기준, □□□□□□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2016.11.22.)기준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일(2017. 5. 9.)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집행액을 자부담으로 처리하거나 회수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검사하여 총 3개소에 37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 ▶ 이외에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지출하도록 안내하고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없이 보조금을 정산검사하여 지급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련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교부결정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내역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정산보고서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보고하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614,71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지급액(원)			비고
				당 초	변 경	정산액	
계(3건)						2,614,710	
★★★★★ ★★★★공사	18.05.☆☆	18.05.29 ~ 18.07.27	-	71,546,490	70,720,000	826,490	
▲▲▲▲▲ ▲▲사업	18.09.☆☆	18.09.19 ~ 18.07.27	-	126,733,530	125,826,940	906,590	
□□□□□ (○○○○) △△공사	17.07.☆☆	17.07.19 ~ 17.11.15	-	91,154,980	90,273,350	881,630	

【위법부당사항】

- 건설 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계상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별표 2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항목¹⁾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그런데, 2018.5.☆☆ ▲▲건설(주) □□□와 계약하여 준공한 「★ ★★★★★★★★공사」에 대하여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로 제출한 “비계 설치 및 철거비”가 공사 설계 내역서에 “강관비 계(쌍줄) 설치 및 해체비”로 계상되어 있어 중복으로 반영되었고, 또한 각종 비계 설치 및 해체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의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여 제외하여야 함에도,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정산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826,49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 ▶ 2018.9.☆☆ ◎◎건설(주) ☆☆☆와 계약하여 준공한 「▲▲▲▲▲▲▲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된 안전장화 10개, 안전우의 10개 등에 대하여 정산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906,59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1)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별표 2] 2-가-2))

- ▶ 2017.7.☆☆ (주)◇◇◇◇◇ ◎◎◎와 계약하여 준공한 「□□□□□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으로 안전시설비 항목에 공사중표지판(2개), 공사안내표지판(4개), 진입금지표시판(1개), 안전모(10개), 안전조끼(3개)를 구입하여 지출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정산서에 제출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촬영장소나 촬영위치를 알 수 없게 구매물품을 정열상태로 촬영된 사진만 있어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워 준공서류에 제출된 사진대지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가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사진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공사관련 표지판(7개)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항목인 안내, 주의·경고 표지 등에 해당되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881,630원(제 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안전관리과장은 「★★★★★★공사」, ▲▲▲▲▲▲▲▲사업」 및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2,614,71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